

1. 개정이유

레지던트 임용 필기시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레지던트 필기시험의 최소합격 기준을 추가하고,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과 이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최소합격 기준 마련 내용 추가(안 제8조)
- 나.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(안 제16조)
- 다.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문구 수정(안 별지 제9호서식)
- 라.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(안 별지 제12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기 타 :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후단 중 “갈음할 수 있다”를 “갈음하고,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퍼센트에 미달하는 전공의의 경우 임용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전문의 자격증”을 “별지제12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앞쪽 하단 제6호 중 “단체의 추천서(영 제7조제3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”를 “단체의 추천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전문의 자격증

[별지 제12호서식]

제 호

전문의 자격증

1. 성 명:
2. 생 년 월 일:
3. 전 문 과 목:
4. 근 거: 「의료법」 제77조

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

210mm×297mm[보존용지(1종) 120g/m²]

비고: 1.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(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)으로 한다.

2.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전공의의 임용) ①·② (생략)	제8조(전공의의 임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는 의과대학 성적(인턴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), 인턴근무 성적(레지던트 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), 필기시험 및 면접·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,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이 경우 인턴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은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<u>같음</u> 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음</u> <u>하고,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퍼센트에 미달하는 전공의의 경우 임용하지 아니한다.</u>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자격 인정) ① (생략)	제16조(자격 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, <u>전문의 자격증</u> 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 및 자격시	② ----- ----- ----- --, <u>별지제12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</u> -----

협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하
여야 한다.

부 칙

<신 설>

-----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